



축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7. 19.]

◇ 제안이유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종축장 및 산란계 농장 등에서는 HACCP을 의무적용하지 아니하여 생산단계 위생·관리가 취약하고, 농장에 대한 축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이 미비하며, 위해사고가 발생한 농가에 가축의 출하중지 등 공중위생상 조치를 하거나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불분명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종축장 및 농장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하고, 농장의 출입·조사 권한 및 공중위생상 우려가 있는 농장에 대한 긴급조치·정보공개 권한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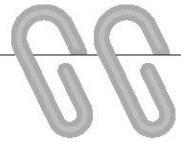
◇ 주요내용

- 가.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축장부터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자체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을 작성·운용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
- 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된 축산물(원유, 식용란)의 검사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가축사육시설의 경영자도 재검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 다. 모든 가축사육시설(소, 돼지, 닭 등)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을 확대함(안 제19조).
- 라. 위해사고가 발생한 가축사육시설의 경영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안 제37조).
- 마.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경영자 등에게 관련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출하정지, 판매중지 등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4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영업자”를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영업자”를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시설



또는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가축사육업자 또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축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자(닭을 사육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자
3.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4.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5.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6.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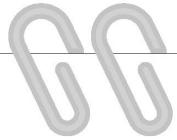
제9조의3제2항 중 “영업자”를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업자”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영업자”를 “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해당 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
2. 가축사육시설의 경영자에 대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치

제1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을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으로 한다. 다만, 해당 영업자가 검사하여야 하는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의3제1항 중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육, 원유, 식용란의 경우에는 성분규격을 말한다)”으로, “영업자”를 “가축사육시설 경영자 또는 영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업장(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가축사육시설 또는 영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업장”을 “가축사육시설, 영업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영업자”를 각각 “가축사육시설 경영자 또는 영업자”로 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해가 발생할”을 “위해발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를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 가축사육시설의 경영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로, “할 것을”을 “하게 하거나,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중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 한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중지조치를 명한 뒤 지체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판매 일시중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그 즉시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평가 결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 한다.